

##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당진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3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11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출취급 부적정

- 1급 임○○ 외 2명은 2021. 02. 25. ○○시 필지를 담보로 차주 이○○ 대출(2건, 총 715,000천원) 취급 시 수목가액을 차감하지 않는 등 담보여력을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정당 대출한도를 총 194,638천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고 여신심사역이 요구한 수목 양도담보를 설정하지 않음

나. 여신심사역 심사의견서 작성 등 부적정

- 3급 조○○는 차주 이○○ 대출 여신심사 시 영업점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산식으로, 담보 취득 할 수 없는 수목을 포함하여 담보여력을 부적정하게 산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심사함

다. 대출심사위원회 심사업무 소홀

- 상임이사 이○○ 외 6명은 차주 이○○ 대출 심사 시 영업점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산식으로, 담보 취득 할 수 없는 수목을 포함하여 담보여력을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대출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승인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3조(여신운용의 원칙), 제42조(승인대상 대출금), 제48조의3(심사대상), 제48조의4(운영), 제48조의6(업무처리), 제54조(심사사항), 제147조(담보의 의의), 제148조(담보의 종류), 제152조(담보권의 종류), 제160조(부동산담보의 범위), 제5편 제144조(대상 부동산), 제144-2조(대출한도)

1. 조합명 : 당진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3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변상 : 1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영업점장 특인대출 부실 발생

- 1급 강○○는 2017. 8. 18. 차주 주○○에게 영업점장 특인대출 20,000천원을 취급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소득을 감안하였을 때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영업점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동대출은 2020. 3. 19. 이후부터 이자가 납입되지 않고 연체되었고 재산조사 결과 자동차가 있었으나 실익이 없었으며 다른 재산은 전혀 없어 2021. 9. 24. 상각처리한 결과 조합에 손실이 발생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20조(영업점장 특인대출)